

보도 일시	2022.12.28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12.27.(화) 09:00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 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 유원규 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 문형진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 이승원 (02-3145-7466)

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·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.

< 주요 내용 >

2023년 1월부터

- ◆ 개인·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
 - (현재)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
 - (내년) ①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
②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
- ◆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
 - (현재)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
 - (내년)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
- ◆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
 - (현재)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(법인 등)를 통해서만 중지 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(종업원 등)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
 - (내년)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(보험금 지급시 등)

I 추진 경과

- 실손의료보험(이하 '실손보험')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
 -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*,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.
 - *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했다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(☞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(이하 '비례보상'))

※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('22.9월말 기준) : 약 150만명

- ①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(단체·개인 또는 단체·단체) : 약 144만명(96%)
- ②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: 약 6만명(4%)*

*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,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·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존재

-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·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「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」('22.9월)을 마련·발표한 바 있으며,
 - 금융당국 -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, 관련 시행세칙 개정*,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'23.1월부터 시행합니다.
 - *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,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('23.1월 시행,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)

< 참고 : 단체·개인실손보험 비교 >

구분		단체실손보험 (피보험자 : 469만명)	개인실손보험 (피보험자 : 3,746만명)
목적 및 대상	가입목적	종업원의 복지	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
	계약자	법인 또는 고용주	개인
	피보험자	보험계약자의 종업원·그 가족	피보험자 본인(혹은 가족)
보장 범위	보장내용	표준약관 + 선택적 추가보장 (임신, 출산비용 등)	표준약관과 동일 (1·2·3·4세대 구분)
	보장한도	1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 등	5천만원
	보험기간	1년만기/재가입	1·3·5년만기/100세까지 자동갱신

II 주요 내용

가. 단체·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

◆ 단체·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,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.

① 앞으로 보험계약자(법인 등)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(종업원 등)도 **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**이 가능해지며, **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**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(신청대상자) ①개인·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,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*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

*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

○ (신청내용)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,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*

* '23.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

② 기존에 실시되던 **개인실손보험 중지** 제도의 경우, 중지 후 재개시 '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' 뿐 아니라 '**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**' 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.

○ (신청대상자) 단체·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

○ (내용)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,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* 가능

*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

○ (**개선사항**) 종전에는 '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' 만 선택가능하였으나,

⇒ 앞으로는 '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' 뿐만 아니라 '**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***' 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

* 단, '13.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(5년~15년)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

나.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

◆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(법인 등)뿐 아니라 피보험자(종업원 등)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.

□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(법인 등)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*, 실손보험 중지제도·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.

*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,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('14.10월~)

○ 다만,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□ 이에, '23.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, 피보험자(종업원 등)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.

III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

①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

○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(<http://www.credit4u.or.kr>)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 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.

②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(보험회사 문의처 : 붙임 1)

○ (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)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(법인 등)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

○ (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)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

【참고 : 소비자 유의사항】

-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, 자기부담비율,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
- ☞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,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

I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(기대효과) 금번 개선된 단체·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,
 - 1계약당 연 평균 약 36.6만원*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* '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 (☞ 본인이 가입한 상품, 연령·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음)
- (향후계획) 단체·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,
 -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,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

붙임 1**개인·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문의처**

손해보험		생명보험	
회사명	고객센터 전화번호	회사명	고객센터 전화번호
메리츠화재	1566-7711	한화생명	1588-6363
한화손해	1566-8000	삼성생명	1588-3114
롯데손해	1588-3344	교보생명	1588-1001
MG손해	1588-5959	흥국생명	1588-2288
흥국화재	1688-1688	NH농협생명	1544-4000
삼성화재	1588-5114	신한라이프	1588-5580
현대해상	1588-5656	DGB생명	1588-4770
KB손해	1544-0114	ABL생명	1588-6500
DB손해	1588-0100	KDB생명	1588-4040
AXA손해	1566-1566	동양생명	1577-1004
AIG손해	1544-2792	KB생명	1588-9922
농협손해	1644-9000	미래에셋생명	1588-0220
ACE손해	1566-5800	푸본현대생명	1577-3311
		라이나생명	1588-0058
		DB생명	1588-3131
		AIA생명	1588-9898

Q1) 별도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모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(종업원)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(법인 등)간에 별도의 약정(특약)이 체결된 경우*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보험계약자(법인 등)가 보험회사와 단체실손보험 중지·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신청 이용이 어려움

Q2) 단체실손보험을 신청하여 중지하였습니다.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 보험계약자(법인 등)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-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(종업원)에게 돌려 드리며, 이 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※ 다만, 환급보험료는 중지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(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험회사에 문의)

Q3) 개인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?

- (중지 신청)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재개 신청)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*에 신청 가능하며, 이 때 별도 보험 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

* 그 외의 경우,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됨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	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유원규	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문형진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이승원	(02-3145-7466)
<공동>	생명보험협회 시장혁신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인호	(02-2262-6645)
		담당자	부 장	유제상	(02-2262-6624)
<공동>	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지훈	(02-3702-8524)
		담당자	부 장	주병권	(02-3702-9790)
			부 장	이형걸	(02-3702-8531)